

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이현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 금액을 조례로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한 납세담보를 50%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으로,

담배소비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, 납세담보를 감면하고 있는 관세 등 국세와의 형평성 제고에도

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개정취지에 공감하며
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2021. 4. 27.

재무국장 이 병 한